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558

발의연월일: 2019. 8. .

발 의 자: 박 순 복 의원

1. 개정이유

자전거이용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의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추후 협의

다.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자전거 보험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가입범위,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≪신·구조문대비표≫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자전거 보험) ① 구청장
	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
	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
	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	② 가입범위,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
	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
	이 따로 정하며, 그 밖의 사항은
	보험약관에 따른다.